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1-10
----------	---------

발의연월일: 2021년 2월 일

발 의 자: 송순효, 강선영, 이충현, 신낙형

김선경, 박성호, 김동협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및 관내 약국을 통한 복약지도와 폐의약품 수거체계를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이를 통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관할구역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나. 폐의약품의 수거 장소를 명확히 하고 동 주민센터를 추가함.

(안 제4조)

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폐의약품의 수거주기와 처리방법을 명시함. (안 제5조)

라. 기존의 포상관련 규정을 표창으로 개정함. (안 제6조)

마. 띄어쓰기, 마침표 및 약칭의 표시 등을 어문규범과 조례의 형식에 맞게 개정함.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나. 협조부서: 의약과, 자원순환과, 자치행정과
- 다. 입법예고: 2021. 2. 19. ~ 2. 2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을 “폐의약품”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발생방지”를 “발생 방지”로 하고, “있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불용의약품 등”을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5조)제2항 중 “구,”를 “구”로, “수거용기”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 소재 약국

2. 구 보건소

3. 동 주민센터

제5조(중전의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서구약사회장은”을 “구 약사회는”으로 하며, “협조한다”를 “협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한다.

③ 구청 폐기물 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구민의 책무) ① (생략)

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하여 필요시 구,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강서구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

③ 구청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구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 -----

-----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된 수거용기-----
-----.

1. 구 소재 약국

2. 구 보건소

3. 동 주민센터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한다.

② 구 약사회는 -----

-----협조한다.

③ 구청 폐기물 관리부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장소에서 수집

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 -----

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
(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
2. 폐의약품
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5년 주기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